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상 주 시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의 요금 체계를 조정하고, 연도별 요금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타 규정의 단순오기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단순오기 및 불분명한 문구 수정(안 제7조제5항, 제10조, 제1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53조)
- 나. 수도사용료 요율 조정(안 제29조 별표3)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40조제1항, 제30조제1항 별표4)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054)537 - 5501
- E-mail: hwiwon99@korea.kr / FAX: 535-3001
- 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입법예고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할 곳: (우37242) 경북 상주시 용마로 164-27 상하수도사업소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